

한국어교육과정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어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외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학력을 갖춘 자 중에서 한국어 연수를 희망하는 자로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규정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3조(선발)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은 접수순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수강료) ①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10주, 20주 혹은 40주에 해당 하는 수강료를 납부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국제교류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납과 차등납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 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반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강 전	전액 환불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해당 월 수강료의 2/3 환불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해당 월 수강료의 1/2 환불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환불불가

※ 국외체류자 중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에서 비자발급지연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청 시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을 반환 처리함.

제5조(교육과정) ①국제교류교육원에는 한국어과정 및 기타 필요한 과정을 두며, 수업은 주간과정으로 1년 4학기, 학기당 10주,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실시한다.

②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조기적응교육, 문화체험(예절)교육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학생행사시간을 한국어교육과정의 수업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6조(출결관리) ①학기당 15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한 자에 대하여 퇴학 및 귀국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면학서약서(별지 서식 1)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1회 수학의 기회를 부여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공적결석자로 인정한다.

1.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
2. 최대 5수업 일에 한하여 학생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3.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료) 각 과정별 한국어 교육 평가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수료증을 국제교류교육원장의 명의로 수여한다.

제8조(시간강사) ①한국어강좌 운영 등을 위하여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

②시간강사의 자격은 한국어교원자격 소지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시간강사는 원장이 위촉하며, 시간강사료 지급기준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④강사 중 주임강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주임강사에게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 적용) 장학금은 본교 한국어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현재 학기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국제교류교육원의 장학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교육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장학금 선정기준) 장학생은 매 학기 성적 및 출결 사항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1조(장학금 선정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휴학자
3. 품행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제12조(장학금 선정절차) ①매 학기 장학생 추천 대상자를 선출한다. 단, 추천 대상자는 교내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②국제교류교육원장은 장학생을 확정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수강료의 감면 또는 급여장학금으로 한다.

제14조(기숙사) 본교 생활관 입사 시 입사비를 납부해야 하며, 본교의 「생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상담) 각 과정별 한국어교육 강사는 학기 별로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취업지원) 국제교류교육원에서는 6개월 이상 한국어과정을 수강한 학생에 한해 아르바이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취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협조한다. 단, 법무

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취업 불허가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17조(의료보험) 한국어교육과정 연수생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비 및 의료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18조(징계) ①우리대학교 및 국제교류교육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 퇴교 및 제적처리 후 출국처리를 할 수 있다.

②재학 중인 학생이 국제교류교육원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 출국을 하였거나, 3수업일 이상 연속 결석을 할 경우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하며 무단결석 또는 연락두절, 거주확인이 불분명 할 경우 계속 수학이 불가하다고 판단, 퇴교조치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등록, 제적 및 자퇴 처리를 할 수 있다.

③위 ①항과 ②항의 해당 할 경우 등록금(수업료)은 반환 하지 않는다.

제19조(과실 및 변상) 개인 과실로 인한 기물 파손이나 분실은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하며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1)

면 학 서 약 서

이 름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상기인은 대신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총 50일 간 진행하는 0000
학년도 00학기 한국어교육과정 연수 기간 중 수업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며 매 학기 15일 (70%) 이하의 출석을 기록 할 시 그 다음 학기에
제적처리, 등록금 미 반환 및 (본국)로 출국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서약자 : 0 0 0 (인)